

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 7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고아읍지역은 도·농 복합지역으로 생활문화기반시설 및 주민의 삶의 질이 상당수준 저하되어 읍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(고아종합복지회관 예정부지 매입)

〈예정부지 매입〉

- 추정가액 : 333,945천 원 (공시지가 기준)
- 대상토지 : 2필지 1,845㎡ (558평)

3. 법적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, 제38조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[illegible]

200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[illegible]

취득대상 토지

□ 재산의 표시

- ▶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23-1번지 지목 잡종지 면적 : 1.749㎡
▶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23-2번지 지목 잡종지 면적 96㎡

□ 위 치 도

